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4월 2일(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8년 4월 4일(수)

4. 관계법규

-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

5. 개정사유

조례상의 ‘구정신문’ 명칭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맞게 ‘소식지’ 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6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-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(제명)

나. 조례 입법취지 보완

- “서울특별시마포구정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”으로 구민에게 알리는 내용 추가 (안 제1조)

다. 소식지 발행과 활용

- “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서울특별시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”로 소식지 게시 내용 추가 (안 제4조)

라. 객원기자 임기 제한 규정 추가

- 객원기자의 다양성과 신규 유입을 위해 “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는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
마.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단서 조항 신설 (안 제11조)

-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.

1.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
2.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
3.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
4. 과대 또는 허위 광고

- 5.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
 - 6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- 바.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로 규정 (안 제13조)
- 사. 활동 중인 객원기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(안 부칙 제2조)

7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구정신문’ 명칭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맞게 ‘소식지’ 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
 - 안 제4조에는 “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” 로 소식지 게시 내용 추가하고,
 - 안 제10조에는 객원기자의 다양성과 신규 유입을 위해 “객원 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 는 조항 신설 하였으며,
 - 안 제11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단서 조항 신설하고,
 - 안 제13조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

요즘 자치단체는 과거에 비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매월 8만부가 발행되고 평균 구독률이 약 76%인 만큼 매우 중요한 구정 홍보 수단이며, 구민과의 주요 소통채널의 의미가 있으므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편성되어야 함.

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소식지 게시 방법의 다양화, 불필요한 광고 게재 차단 근거 마련, 객원기자의 임기 설정 등은 시대변화에 맞춰 구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